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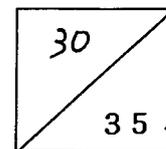
의안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제 의 자
5	4	1996. 2.15.	총재 이경식

의안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개정

의결사항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제의관계
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7조

제의취지 경제 개방화에 대처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금융의 활성화 등을 위해 지원이 긴요하거나 규제의 실익이 적은 숙박업, 식당업, 육탕업 및 이·마용업 등에 대한 여신규제를 완화하고자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



<참고사항>

제의관계 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7조

① (생 략)

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 하며 한국은행의 업무, 운영,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

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 지시를 발할 수 있다.

④~⑥ (생 략)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개정(안)

현행	개정(안)	비고
<p>제1조~제8조 (생략)</p> <p>(신설)</p> <p><별표></p> <p><u>여신금지부문</u></p> <p>1. 토지의 매입</p> <p>다만, 다음 각 호의 용도를 제외한다.</p> <p>가. (생략)</p> <p>나. 여신취급일(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u>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중 선분양되는 공업단지의 입주예정업체인 경우에는 토지분양대금 최종회차분 납일일과 공단조성 완공일중 조기도래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착공될 공장건설용</u></p> <p>다.~마. (생략)</p> <p>2. (생략)</p>	<p>제1조~제8조 (현행과 같음)</p> <p><u>부칙</u></p> <p><u>이 규정은 1996. 3. 2부터 시행한다.</u></p> <p><별표></p> <p><u>여신금지부문</u></p> <p>1. 토지의 매입</p> <p>다만, 다음 각 호의 용도를 제외한다.</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여신취급일(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u>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중 선분양되는 산업단지의 입주예정업체인 경우에는 토지분양대금 최종회차분 납일일과 산업단지조성 완공일중 조기도래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착공될 공장건설용</u></p> <p>다.~마.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 시행일자 명시</p> <p>○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95. 12. 29)으로 공업단지의 명칭이 산업단지로 변경됨에 따른 자구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3. 다음의 업종에 대한 여신		3. 다음의 업종에 대한 여신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상 분류번호	업종명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상 분류번호	업종명	
3694中	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	3694中	(현행과 같음)	
551中	관광「호텔」을 제외한「호텔」업과 여관업 및 콘도미니엄업(단, 제주도소재 업소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소재 「호텔」 및 여관업소에 대한 시설자금은 제외)	551中	관광「호텔」을 제외한 「호텔」업과 <u>갑등급여관업</u> 및 콘도미니엄업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1. 제주도소재 업소에 대한 시설자금 2.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소재 「호텔」 및 갑등급여관업소에 대한 시설자금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소재 갑등급여관업소에 대한 시설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등급여관업 및 여인숙업을 여신금지업종에서 제외 ◦ 조문정비 ◦ 조문정비 ◦ 을등급여관업 및 여인숙업을 제외함에 따른 조문정비 ◦ 관광지소재 갑등급여관업소에 대한 시설자금 취급 허용
5521中	건평 100㎡ 또는 대지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단,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 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은 제외)	5521中	건평 또는 대지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1.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2.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소재 식당업에 대한 시설자금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소재 건평 330㎡ 이내이고 대지 660㎡를 초과하지 않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에 대한 시설자금 4.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 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신금지대상 식당업의 영업장 규모 상향 조정 ◦ 조문정비 ◦ 조문정비 ◦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소재 식당업에 대한 시설자금 취급 허용 ◦ 관광지소재 건평 330㎡ 이내이고 대지 660㎡를 초과하지 않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에 대한 시설자금 취급 허용 ◦ 조문정비

현행		개정(안)		비고
5522	주점업	5522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정비 ◦ 여신금지업종 제외 ◦ 사우나탕업, 터키탕업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전 옥탕업에 대해서 여신 허용
55232	다방업	55232		
65929中	전당업	65929中		
70	부동산업 (단, 공장건물 및 서민주택 임대업에 대한 여신과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에 의한 시장개설자의 당해시장 임대업에 대한 시장신축 또는 증·개축자금은 제외)	70	부동산업 (다만, 공장건물 및 서민주택 임대업에 대한 여신과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에 의한 시장개설자의 당해시장 임대업에 대한 시장신축 또는 증·개축자금은 제외)	
92191中	「댄스홀」, 「댄스」 교습소	92191中	(현행과 같음)	
92193	전자오락실운영업	92193		
92431中	「헬스클럽」	92431中		
92434	골프장운영업	92434		
92437	당구장운영업	92437		
92496	도박장운영업	92496		
9302中	사치성 이발소, 미장원		(삭제)	◦ 여신금지업종 제외
93092	옥탕업(대중탕 제외)	93092中	사우나탕업, 터키탕업 및 안마시술소	◦ 사우나탕업, 터키탕업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전 옥탕업에 대해서 여신 허용